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8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년 9월 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행정위원회(2006.9.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 진)

가. 개정이유

- 2005.12. 6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개정안
통보 근거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
하는 한편,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고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개정

다. 참고사항

- 근거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개정안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완섭)

- 개별 조문을 살펴볼 때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라는 문구를 “동”으로 바꾼 안 제1조 내지 제6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희시설을 연계 활용함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 관내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 강구를 규정한 안 제7조 제7항의 신설안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내 종교단체, 학교, 경로당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이용 등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 안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4항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한 규정으로 타당하며
- 안 제17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함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거주지 동 이외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주민의견 수렴,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도 있으며
- 안 제17조 제7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타당하며
- 안 제18조 제5항의 신설은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위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이고 부칙의 경과조치에 관한 조항은 기존의 지위를 존중·보호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부칙에는 2개의 “조”로 표시하고 있지만 항의 수가 5개를 넘지 않으므로 “조”가 아닌 “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1) 본 조례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규정 개정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거주지 동 이외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주민의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인 이내의 일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 2) 당연직 고문 규정을 유지하게 됨으로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 3) 위원 추천 시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1) 제17조 제1항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 2) 제17조 제2항 제1호중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 3) 동조 제5항 중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 4) 동조 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하고,
- 5) 제20조 제1항 중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단서삭제”를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 6) 동조 제2항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 7) 부칙 “제1조”를 “제1항”으로, “제2조”를 “제2항”으로 수정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 련 1 호
------------	------------

제안년월일 : 2006. 9. 8.

제안자 :윤준용위원외1인

1. 수정 이유

- 본 조례 중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규정 개정으로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이 거주지 동 이외에서는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주민의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위원 추천시 당해 동의 기관장, 유관단체장 등도 추천할 수 있도록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제17조 제1항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 제17조 제2항 제1호중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 언론 · 문화 · 예술 기타 시민 ·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 · 언론 · 문화 · 예술 기타 시민 ·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 제17조 제5항 중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 제17조 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하고,
- 제20조 제1항중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단서삭제”를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 제20조 제2항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 부칙 “제1조”를 “제1항”으로, “제2조”를 “제2항”으로 수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7조 제1항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제1호중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 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고, 제5항중 “당해동의 관할 구역 안에”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고, 제7항중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로 하고,
- 안 제20조 제1항중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단서삭제”를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고문”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하고
- 부칙 “제1조”를 “제1항”으로, “제2조”를 “제2항”으로 수정

수정안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 되, 2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④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을</u> <u>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u> <u>내에</u>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u> <u>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등) ①----- ----- --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u><후단 삭제></u> ② 1.----- ----- -----추천하는 자 ⑤-----, <u>당해 동 의 관할 구역</u> <u>안에</u> ----- ----- -----. ⑦----- <u>고문의 임기는 2년</u> <u>으로 하되</u> ----- -----.	제17조(구성 등) ①----- ----- ---, <u>별도로 2인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u> <u>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u> <u>있다.</u> ② 1. <u>당해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통장대표 및 유관</u> <u>단체장,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u> <u>시민·</u> <u>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u> ⑤-----,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을</u> <u>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 의 관할 구역 안에</u> --- ----- ----- ⑦----- <u>당연직이 아닌</u> <u>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u> <u>고문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u>당연직 고문의 경우</u> <u>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u> <u>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u>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의</u>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0조(해촉) ①----- <u>고문</u> ----- ----- ----- ----- <u><단서삭제></u> ②----- ----- <u>고문</u> ----- -----. 부칙	제20조(해촉) ①----- <u>당연직이 아닌</u> <u>고문</u> ----- ----- ----- ----- <u>.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u> <u>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u> <u>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u> ②----- ----- <u>당연직이 아닌 고문</u> ----- -----. 부칙

	<u>제1조</u>(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제2조</u>(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②(경과조치) (개정안과 같음)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
----------	---

제출년월일 : 2006. 8.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하며
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문 정비

-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안 제1조 내지 제7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안 제7조)

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안 제7조, 안 제11조)

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

-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안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안 제17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06. 1. 23. ~ 2. 11.)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7조(운영)제1항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제4항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구성 등)제1항중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각각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를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로 하며, 동조제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동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제2항중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를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해촉)제1항 및 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각각 “고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15조중 “동사무소에”를 각각 “동에”로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중 “동사무소별”을 각각 “동별”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제1호중 “동사무소의”를 각각 “동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조(목적)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u>동사무소</u>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u>지방자치법</u>」----- ----- ----- ----- ----- <u>동에</u>----- ----- -----
제 2 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u>동사무소</u>에 설치된 각종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략)	제 2 조(정의) ----- -----. 1. ----- ----- <u>동에</u> ----- -----. 2. (현행과 같음)
제 3 조(원칙)·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u>동사무소별</u> 자율적 운영 유도 4. (생략) 5. (생략)	제 3 조(원칙)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동별</u>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제 4 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u>동사무소에</u>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u>동사무소의</u>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 5 조 (기능)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u>동사무소의</u>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 6 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u>동사무소에</u>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u>동사무소별</u>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u>동사무소의</u>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 4 조(설치 등) ----- <u>동에</u> -----. ----- <u>동의</u> ----- -----. ② (현행과 같음) 제 5 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u>동의</u> ----- -----. ③ (현행과 같음) 제 6 조 (시설 및 프로그램) ----- ----- ----- <u>동에</u> ----- -----. ② ----- <u>동별</u> ----- -----. ③ ----- <u>동의</u> ----- -----. ④ (현행과 같음)
---	--

제 7 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운영"이라 한다)은 <u>동장이 한다.</u> ② ~ ③ (생략)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u>동사무소의 동장</u>,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u><신설></u>	제 7 조 (운영) ① -----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동장과</u>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이용 등) ① ~ ③ (생략)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그 회복을 위해 변상</u>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 11 조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 ⑤ (현행과 같음)
제 15 조 (설치)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u>동사무소에</u>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 15 조 (설치) ----- ----- <u>동에</u> -----
제 17 조 (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u>2인</u>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제 17 조 (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u>3인</u>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u>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u> ②동장은 당해 <u>동사무소의</u>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u>선출된 후보자</u>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 •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u>추천하는 후보자</u>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u>선출된 후보자</u> ③ (생략)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u>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생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④ (생략)	둘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u>동의</u> ----- ----- <u>선정된 자</u> ----- -----. 1. ----- ----- ----- <u>추천하는 자</u> ----- 2. ----- <u>선정된 자</u>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u>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u>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u>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u> ----- -----. 제 18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간사) ① (생 략)	제 19 조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②-----
금 위원회의 <u>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u>	--- <u>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u>
제 20 조 (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u>당연직</u>	제 20 조 (해촉) ①-----
<u>이 아닌 고문</u>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u>고문</u> ---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u>다만, 당</u>	----- . < <u>단서삭제</u> >
<u>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u>	
<u>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u>해촉할 수 있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②-----
위원 및 <u>당연직이 아닌 고문</u> 의 임기는 전임	----- <u>고문</u> -----
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